의 안 번 호

1404

[울산광역시 중구 국내·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]

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7. 11. 10.(금), 이복희 의원 외 10 명

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7. 11. 16.(목)

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7. 12. 5.(화)

2. 제정이유

국내·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통해 국내와 국제교류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교류추진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, 정의, 적용범위(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)
- 나. 자매결연 대상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다. 사전검토 및 교류에 관한 사항(안 제5조 및 제6조)
- 라. 의회 동의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마. 체결절차 · 방법 및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8조 및 제9조)
- 바.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)
- 사. 의회의 자매결연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)

4. 근거법규

- 가.「지방자치법」제22조, 제30조, 제39조
- 나.「대한민국헌법」제118조

5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 조례안은 국내·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자매 결연 등의 체결 및 교류사업 추진에 따른 제도적 기반을 마련 하고,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은 12개 조문과 2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

- O 세계화와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도시 간의 효율을 극대화 하기 위해 상호간의 유대를 형성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 데,
- O 이에 발맞추어 자매결연과 교류사업의 추진에 있어 대상 선정에서부터 지원 및 사후관리 등의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였으며,
- O 특히, 국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체결, 변경 또는 취소할 경우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,
- O 무분별한 자매결연을 방지하고 자의적인 취소를 예방하는 등 의회가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며,
- O 또한,「대한민국헌법」제118조 및「지방자치법」제30조에 따라 중구의회의 자매결연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본 제정 조례안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